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92

발의연월일: 2022. 9. 28.

발 의 자:이철규·태영호·배현진

정운천 • 이인선 • 구자근

양금희 · 최영희 · 김학용

한무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액화천연가스(LNG)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음. 지난해 378.9%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말 437.3%까지 증가하고, 미수금 규모도 내년 3월 12조6,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특히,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29조7,000억원으로,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은 21조3,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임.

이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항 중 "4배"를 "5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사채의 발행 등) ① (생	제14조(사채의 발행 등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	②
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	
<u>4배</u> 를 초과하지 못한다.	<u>5भ</u> ो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